

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(제54조제1항관련)

구 분		제조수량	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
제조(변형 및 가공제외)	화약 및 폭약(초유폭약 및 기폭약 제외)	1일 1톤 이상	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		1일 1톤 미만	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	초 유 폭 약	1일 7톤 이상	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		1일 7톤 미만	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	기 폭 약	1일 50kg 이상	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		1일 50kg 미만	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	화공품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)		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
	신 호 염 관·신 호 화 전 및 꽃 불 류	1일 300kg 이상	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
		1일 300kg 미만	3급·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변형 및 가공	화약·폭약 및 화공품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 제외)	1일 1톤 이상	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		1일 1톤 미만	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	신 호 염 관·신 호 화 전 및 꽃 불 류		3급·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
비 고	①신호염관·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를 1일 50kg에 미달하는 화약 또는 폭약(기폭약을 제외한다)을 제조할 경우에는 신호염관·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. ②1일 50kg을 초과하여 화약 또는 폭약(기폭약을 제외한다)을 제조하는 제조소에서 이를 원료로 하여 신호염관·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할 경우에는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선임할 수 있다. ③변형 및 가공란중 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 화공품은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.		